

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」 시행 공고(1차)
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[1] 지원대상 및 금액

① 공통요건

- (사업체)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
- (매출액) 매출액이 소기업* 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
 - * '20년 기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원, 도소매: 50, 제조: 120 등)
 - *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
 -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
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1. 02. 28. 이전
-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 - 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

▶ **지원유형 및 지원금액**

[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]

구 분	③일반업종
	③-1 경영위기 (매출 20%이상 감소 업종)
기준	20% 이상 ~ 40% 미만 ▶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(전세버스 -28%)
매출액 요건	소기업&매출감소
지원금액	200만원

-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'19년 대비 '20년에 20% 이상 감소한 "10개 분야 112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 기준
30. 운수 및 창고업	H	80억원 이하

1. 지원방법 및 절차

① 신속지급

- 신청기간 : '21. 3. 29(월) 06:00 ~
 - 원활한 신청을 위해 3.29(월)~30(화)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*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(3.31(수)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)
 - * 3.29(월) 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, 3.30(화) : 끝자리 짝수
- ※ 단,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**4.1일(4일차)부터**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 - ① 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(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)"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"버팀목자금플러스.kr" 입력

□ 전화 문의 :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

☎ 1811-7500 (평일 09 ~ 18시 운영)

□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버팀목자금플러스.kr) - "채팅상담"
또는 "**버팀목자금플러스114.kr**" (평일 09 ~ 20시 운영)